

부부 재산형성 공동기여때 이혼 위자료에 양도세 불가

서울고법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부부가 나눠가진 재산에 대해 단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매긴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7일 합의이혼한 서아무개(경기도 오산시)씨 부부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1억7백여만원의 양도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부부가 나눠가진 부동산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며 "이혼에

따라 이를 나눠갖는 것을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 91년 5월 합의이혼하면서 3층짜리 주택과 밭 등을 나눠가졌으나 93년 12월 수원세무서장이 이에 대해 유상자산 양도에 해당한다며 1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매기자 소송을 냈다.

강희철 기자

성폭력 추방 시민대회

황수연씨 구속수사 촉구 및 학교내 성폭력근절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공원에서 회원 및 시민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추방을 위

한 서울 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제 성폭력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성의식의 문제"라며 △각 교육청에 성전담부서 설치 △실정에 맞는 성교육 실시 △성교육 전담교사 양성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황수연 전 신양중 교장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조처 등을 촉구했다.

박종생 기자